

제400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10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12월6일(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1)
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6)
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28)
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2)
5.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9)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0)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7)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8)
9. 장애인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3)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1)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2)
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3)
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0)
1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0)
15.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1)
16.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94)
1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6)
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6)
19.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1)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2)
2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5)
2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축구 결의안(임오경 의원 등 125인 발의)(의안번호 2112415)
2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0)
24. 국가유산기본법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1)
2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8)
26.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1)
27.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2)
2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3)
2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4)
3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5)

3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41)
3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3)
33.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7)
3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3)
3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4)
36. 청와대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3)
37.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2)
3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6)

상정된 안건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1) 3
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6) 3
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28) 3
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2) 3
5.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9) 3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0) 3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7) 3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8) 3
9. 장애인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3) ... 3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1) 3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2) 3
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3) 3
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0) 3
1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0) 3
15.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1) 3
16.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94) 3
1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6) 3
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6) 3
19.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1) 3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2) 3
2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5) 3
2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축구 결의안(임오경 의원 등 125인
발의)(의안번호 2112415) 3
2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0) ... 3
24. 국가유산기본법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1) 3
2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8) 3
26.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1) 4
27.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2) 4
2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3) 4
2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4) 4
3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5) 4

3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41)	4
3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3)	4
33.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7)	4
3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3)	4
3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4)	4
36. 청와대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3)	4
37.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2)	4
3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6)	4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홍익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병극 제1차관은 카타르월드컵 관련 공무 출장을 사유로, 조용만 제2차관은 국무회의에 장관 대신 참석하고자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로 이를 허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과 결의안을 상정한 후 위원님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1)
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6)
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28)
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2)
5.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9)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0)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7)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8)
9.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3)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131)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2)
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3)
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0)
1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0)
15.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1)
16.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94)
1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6)
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6)
19.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1)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2)
2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5)
2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 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임오경 의원 등 125인 발의)(의안번호 2112415)
2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0)
24. 국가유산기본법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1)
2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8)

2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1)
27.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2)
2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3)
2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4)
3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5)
3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41)
3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3)
33.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7517)
3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3)
3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4)
36. 청와대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3)
37.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2)
3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6)

○위원장 홍익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
38항까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의 법률
안과 1건의 결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상정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21항, 2건의 정부안에 대해 제안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
관 박보균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위원장님
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
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단순 자
문 성격에 불과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일부 위원
회는 문체부장관이 필요한 경우만 구성·운영하

도록 전환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
는 것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
률안은 국무총리 소속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한민국체육유
공 자지정심의위원회를 문체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에만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
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펴
보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노
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
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정연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문체부 1차관 소관 17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8항까지 문화
재청 소관 16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 총
3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
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법률입니
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페이지의 의사일정 제7항
까지 보고를 생략하고 4페이지 하단 의사일정 제
8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체등급분
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하는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
서는 그 광고나 선전물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
터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온라인비
디오물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려는 자체등급분
류제도 도입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
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확인한 광고·선전물의 유통 범위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유해한 광고·선전물의 무분별한 유통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해성 여부를 확인한 광고·선전물의 제공 범위가 본비디오물과 같이 해당 플랫폼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정주 의원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성일중 의원안은 OTT 등 영상저작물최종제공자가 영상저작물을 제공한 결과 발생한 수익에 비례하여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해외 사례에서 창작자에 대한 비례보상 원칙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영상저작물 저작자들이 창작활동의 대가를 받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 저작자와 영상저작물최종제공자가 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당한 보상 청구권의 법적 권원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고 비례보상을 강제하는 것은 당사자 간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영상콘텐츠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 등을 통해 그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유정주 의원안은 최근 불법 콘텐츠로 연결되는 링크를 모아 놓은 이른바 링크사이트가 불법복제물 유통의 주요 채널이 되면서 불법복제물 링크 행위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이와 같은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 신속한 단속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속 차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저작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만 링크 행위는 인터넷 공간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침해 간주 행위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구성할 필요가 있고 접속 차단

의 경우 현재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각 부처 소관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중복규제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이용호 의원안은 정보 분석, 일명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물 이용 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업자의 저작물 이용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함으로써 데이터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전송의 구체적인 허용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영리 목적의 정보 분석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해외 입법례와 의견이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과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라는 공익 간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용호 의원안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대가와 저작물 이용으로 양수인이 얻는 수익 간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가 양수인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EU·프랑스·독일 등에서도 창작자에게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보상 청구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양수인도 저작권 양수를 위해 지불한 대가에 비해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작자에게만 보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고 현저한 불균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보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불확실성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기능이 유사·중복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행정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할 경우 의사결정에 민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위원회를 비상설화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이 행정 편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경우 부처 간 협력이 어려워지거나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35항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안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산기본법안은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사용되고 있는 ‘문화재’ 용어의 정책적 한계와 분류의 비체계성, 국제기준과의 비정합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보편적 유산 개념을 받아들여 국가유산체제 도입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유산의 가치와 권위, 국가의 보호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 그간의 문화재 용어를 대체하는 ‘국가유산’ 용어를 도입하고 이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함으로써 개별 유산별 보호를 위한 관련 법체계의 근거를 제시하는 등 국가유산체제 도입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유산의 분류체계에 대해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을 유형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하위에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두자는 의견 등이 있으므로 제정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유산기본법안 제정에 맞추어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념물 중 동물, 식물, 지질, 명승 등의 기념물을 비롯한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관련 규정과 기후변화·자연재해 등의 위협에 대비해 자연유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 등을 독자적인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법률로 멸실·훼손 위기에 놓인 동식물, 지질자원 및 명승자원을 체계적·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동식물과 자연경관이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환경

부에 의해서도 관리되고 있어 환경부 소관업무와의 광범위한 중복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의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가유산법 제정에 따른 개정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은 생략하고, 15페이지의 의사일정 제29항 김승원 의원안은 지역의 역사성 및 독특한 문화재 특성을 감안한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장에게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지정된 보호구역 조정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유지 여부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구체적인 행위기준 등을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문화재 관리에 있어 특례시의 자치권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는 필요한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이 지정문화재 지정과 주변경관 등의 보호를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등 관련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도지사 외 특례시장에게도 관련 권한을 중복적으로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와대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청와대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청와대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운영, 청와대 관리주체, 청와대 내 제한행위 및 허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청와대 관리주체 및 활용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을 통해 국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로드맵을 마련 중으로, 법안심사 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제정안에서는 청와대의 관리청을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인 청와대 부지와 청와대 내에 소재하는 문화재 등의 관리 권한

을 고려할 때 관리청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익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문체부 2차관 소관 법률안과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 4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행위를 축소·은폐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실을 축소·은폐한 경우 이를 제재하는 내용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확보하려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벌칙 및 과태료의 대상에 있어 신고의무자와 위반 시 처벌대상자의 일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벌칙 수준을 고려한 벌칙 상향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산지와 산림에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체험하는 산악관광진흥을 위한 개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산악지역에서의 입지 및 행위 규제를 완화한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조세·부담금을 감면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산림을 활용한 산악관광개발사업을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환경부, 산림청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기준을 안전·위생기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어린이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체육시설은 다양한 연령, 특성을 가진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정부가 제출한 위원회 정비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를 각각 소속 변경, 비상설기구화하려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축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같이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를 통한 남북한 교류와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정부와 IOC, 북한 당국에 남북 공동개최, 공동응원단 구성, 문화예술 교류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남북 공동개최 등이 성사될 경우 남북의 갈등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법률안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익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결의안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호정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5분씩 드리겠습니다.

류호정 위원님.

○**류호정 위원** 10항, 11항 저작권법 관련해서 짧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하기에도 입이 아플 정도인데, 창작자 창작환경 실태조사 2022년도 것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70% 정도가 연출료를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2000만 원 이하였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수익이 창작자에게 적절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콘텐츠산업 발전에도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제도에 따르면 영상물 공정보상제도 도입으로 유입될 자금이 연간 최소 600억 원에 달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추정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제도가 없어서 해외 단체에서는 보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정부에서 파악하고 계신 자료가 있을까요, 제도 도입 시에 우리가 받게 될 보상금 그리고 지불해야 할 보상금 차액? 추정치여 가지고 혹시 정부 측에는 자료가 있나 궁금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 특히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분야 현장과 긴밀히 접촉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직접 가거나 담당 국장이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그리고 이게 세계적으로는 제도가 많이 자리 잡고 있지만 한국에는 아직 그런 제도가 미비한 상황인 건데 보면 보상을 지급해야 할, 가령 예를 들면 플랫폼들은 조금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싫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과기부나 유관부처를 설득하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영화감독님 개개인이 그 커다란 플랫폼사를 설득하고 하는 것이 조금 갑을관계에서 불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관계부처 설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주 위원** 저는 한 가지 제안 및 질의입니다. 제안이기도 하고 질의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저와 국민의힘 성일중 의원님께서 받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위 논의 안건에서는 빠졌습니다. 간사 협의를 통한 안건 조율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계신 문체위 위원님들께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함께 공동 발의를 해 주셨고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콘텐츠가 발전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제가 이 법안을 내고 나서 굉장히 많은 언론사에서 이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창작자 권리에 관해서 논의를 하던 예산을 쥐고 있는 투자사 또는 플랫폼사의 입장에서 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창작자의 권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려하는 플랫폼 투자사가 받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실패하면 플랫폼사나 투자사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창작자들도 같이 어려워집니다. 다시는 기회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데미지가 엄청 큼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작품이 잘 되었을 때 한쪽만으로 기울어지는 이 분배 방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타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 창작자 권리 보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에 관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를 위한 첫 걸음의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비록 소위 논의 안건에서는 제외되었으나 다음 번 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간사님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문은 오늘 검토보고 요약에도 나왔듯이 영향 분석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체부에서. 이것은 의견수렴과는 좀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계산을 바탕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를 손해 보았을 때 혹은 또 얼마나 흥행이 되었을 때 그 수치에 따라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데이터 접근으로 영향 분석을 한 뒤에 저희 위원들에게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K-컬처가 계속 활발하게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현장 상황이라든지 실태조사 그것을 계속 면밀하게 추진해 가지고 그 내용을 나오는 대로 중간중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주 위원 아마 의견수렴만 하시면 이 법안은 굉장히 어려워 보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 분석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유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유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를 출신 김승수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류호정 위원 또 유정주 위원님께서도 저작권 관련되는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새롭게 상정된 법안들도 몇 개의 저작권법이 있습니다라는 기준에 이미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저작권 관련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저작권 문제가 우리 K-콘텐츠의 발전 또 문화예술인들의 정당한 보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또 그만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저작권자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반영한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이 저작권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또 다른 웹툰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불법복제나 유통으로 인한 그런 피해들, 스포츠토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피해를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저작권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K-콘텐츠의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피해 규모라든지 피해를 당한 사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수치는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주기적이라는 것은 한 달에 두세 번씩 굉장히 살펴보고 따져보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보면 웹툰, 웹소설은 웹소설대로 불법복제·유통이 실시간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은 거의 안 하고 있으면서도 판호 발급도 안 하는 그런 게임들이 버젓이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 스포츠토토 이런 것들도 유사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토토는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거의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콘텐츠 문화산업 전반에 있어 가지고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치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협회를 통한 추정치 그런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작권의 관리·보호를 위한 인력과 조직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도 상당히 지금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중심을 잡고 유관부처와의 협조는 물론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력 및 조직 보강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김승수 위원 이번에 새롭게 상정된 공정보상과 관련해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갑을관계에서는 을의 위치에 있는 저작권자들이 제대로 된 권한을 권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나온 것인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공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 보면 국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문체부에 사전협의라든지 또 사전평가심의회를 두도록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얼핏 보면 자치분권 이런 측면하고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국립이 아닌 공립시설인데 대해서 굳이 이렇게 문체부에서 관여할 필요가 어떤 필요에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지금 지적하신 그 대목은 국립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어떤 관료적인 영향력이 개입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여러 부분을 점검하고 따져보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어야 될 필요

요성이 있는데 사실은 문화·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여, 간섭만 많이 한다는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필요성 여부와 또 이렇게 문체부가 관여했을 경우에 지역·지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고.

또 반대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국감 때 많이 제기했던 만화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연간 100억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최근 언론에 보면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공익신고자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부당 조치라든지 심지어는 노조에 대한 도청 또 협회나 관련 단체와 유착관계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내가 지적한 만진원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문체부 차원에서, 장관님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거기서 부천시 소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은 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지원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관리감독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 가지고 필요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훈 위원 장관님, 1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지금 전자여행허가제도 실시를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훈 위원 전국 도입이 다 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훈 위원 전자여행허가제도라는 것은 원래 취지가 불법 입국, 불법 취업, 불법 체류 차단을 통해서 하는데 그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행업계에서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더라 이런 얘기인데, 전자여행허가제도에 대해서 여행업계의 목소리 한번 들어 보신 적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이병훈 위원 어떻던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거기서 어떤 장애 요인에 대해서 다국어 지원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병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보통 기업체에서 포상 성격으로 하는 인센티브 관광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관광단체나 국제회의 참가단체 등 이런 경우는 통상 불법체류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전자여행허가제도가 개별적이고 개인 단위로 하다 보니까 단체 중 일부만 승인되는 사례가 나와요. 최근에도 태국의 모 기업이 이렇게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하도 복잡하니까 관광여행지를 변경을 했어요, 베트남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가 한국관광 방문의 해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이병훈 위원 관광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전자여행허가제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이 국문, 영문 2개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맞습니다.

○이병훈 위원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17개 언어로 나와요, 미국은 25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개 언어를 하다 보니까 일본이나 대만이나 태국이라든가 이런 방한 관광객들이 허가 신청에 큰 애로를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단체관광객이 동일한 사항을 계속 반복해서 입력을 해야 돼요. 주소, 국적, 입국 목적, 여행사명 이런 것을 일일이 하다 보니까 여행사들 추가 업무 부담도 많고 한국으로 방문을 하려다가 돌려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주무부처인 법무부하고 단체관광객 단위로 일괄 심사를 도입한다든가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한다

든가 또 관광단체 정보를 일괄 등록하는 기능을 개발한다든가 그래서 여행 편의를 도모하는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아주 세심하게 지적하신 대목이라든지 짜임새 있는 대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무부와 치밀하게 협조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안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 지금 전자여행허가제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전부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축소하는 방안도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법무부야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방침에 따라서 하겠지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문체부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도적 보완이 됐을 때 관광업계도 지금 엄청 어려운데 이것을 도와주는 격이 되고 한국 인바운드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이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 장관님, 저는 법안하고는 상관없이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베트남 국가주석 만찬은 청와대 영빈관이 사용되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어제 갔습니다.

○임오경 위원 애초 어디에서 만찬이 예정되어 있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본래 박물관에서 아마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또 갑자기 이렇게 졸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지난달 21일 국가 주요 행사로 인해서 휴관한다고 벌써 중앙박물관 공지까지 다 해서 그러한 부분의 대처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최초로 아마 그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인원이라든지 국민 만찬의

격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게 1일 날 만찬 장소가 바뀌었다라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

○임오경 위원 몰랐습니까? 지난달 21일 국가 주요 행사로 휴관한다고 해서 공지까지 다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요, 갑자기 영빈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달 1일 만찬 장소가 영빈관으로 내용이 바뀌어서 영빈관구역 시설환경 개선 및 행사 등으로 출입제한 공지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우리 일반 국민은 참관을 할 수 없게 되었고요.

문체부에서는 언제 전달을 받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저희가 주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어저께 제가 거기에 가봤을 때 청와대 영빈관—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지어진, 1978년에 지어진 영빈관—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새롭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외국 국민을 모시는 자리로 품격과 어떤 면모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격에 걸맞은 대규모 내·외빈 행사 시 최적의 장소를 찾는다고,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논평을 해주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임오경 위원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동안 용산 국방컨벤션이나 전쟁기념관, 호텔 등에서 외빈 행사를 한 열 차례 치른 적이 있습니다. 경호상의 문제 등 어려움이 많았고 국민급 외빈을 맞기 위해 알맞은 장소를 찾기도 어려웠었는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열 차례에 걸쳐서, 10회에 걸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부터 시작해서 중앙박물관, 청와대 영빈관, 호텔, 용산 국방컨벤션, 전쟁기념관, 총리공관까지 활용을 다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지, 갑작스럽게 왜 영빈관으로 또 바꾸셨어요?

처음부터 예산과 졸속 이전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하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한 것, 국민이 청와대 개방에 있어서 너무나 좋아한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을 써 가면서 음악회, 콘서트, 전시회

등등 하시면서 우리 장관님은 너무나 당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날 벌써 중앙박물관으로 국민 만찬이 정해졌는데 하루아침에, 그것도 1일 날 영빈관권역 시설환경으로 인해서 개방을 안 하게 되었다 이렇게 딱 공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무계획·무절차로 인해서 졸속으로 행사를 진행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졸속이 아니고요, 국민 만찬의 격을 높이고 거기 베트남 방문단의 인원이 많아져서 그리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격을 높이는 것 알고 있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계획·무절차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전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되었던 거지요. 국가의 최고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렇게 졸속 이전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준비 무계획·무절차로 인해서 앞으로 영빈관 활용하고 그때그때 그때마다 열 군데, 여섯 군데 이상을 계속 돌면서 할 겁니까? 호텔에서 했다가 용산에서 했다가 전쟁기념관에서 했다가 컨벤션센터에서 했다가 그날 기분에 따라서, 계속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장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임오경 위원 저는 그런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해외……

○임오경 위원 아니요. 장관님, 영빈관을 신축한다고 그래서 878억 든다고 그래서 이것도 논란이 돼서 철회까지 하셨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체부에서도 정확한 기조로 해서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이것 언제까지 무계획으로, 졸속으로 인해서 천문학적 예산 계속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양쪽, 아니, 양쪽도 아니지요. 몇 군데입니까, 여섯 군데. 그때 그때마다 국민 행사할 때마다 우리 경호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호원들은 또 무슨 죄가 있어요?

기분에 따라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3일

전에 이렇게 행사가 바뀐다면 문체부에서도 어떠한 역할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저는 무계획하게 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해외 국가원수라든지 해외 유력 인사들이 올 때 국민 만찬도 있을 수 있고 국민에 준하는 만찬도 있을 수 있고 비공식적인 만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장소가 이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빈관을 활용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청와대활용·관리자문단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나요, 지금 문체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청와대관리·활용단은 대통령실 산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저희하고 협조는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최종 결론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오경 위원 이중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위원장 홍익표 1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이용호 위원 지금 현안질의가 아니니까……

○임오경 위원 문체위원도 이것을……

○이용 위원 위원장님, 이것 현안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임오경 위원 제가 현안질의가 아니지만 장관님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질의라고 생각하니까……

○이용 위원 그것은 운영위에서 할 일이지 왜 여기에서 합니까?

○임오경 위원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자, 위원님들, 발언하고 계실 때는……

○이용 위원 발언을 몇 분을 주십니까, 지금?

○임오경 위원 발언 끝나고 나서 하십시오.

○위원장 홍익표 1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라고 제가 드렸잖아요.

○이용 위원 5분 드리고, 3분 드리고, 1분 드리고……

위원장님, 운영에 대해서 좀 절차를 지켜 주십시오.

○위원장 홍익표 운영은 위원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집니다.

자, 1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임오경 위원 장관님, 문체부의 원칙을 정했으

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또 청와대가 예산 낭비 없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문체부에서도, 장관님께서도 그러한 건의를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장관님께,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전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무계획·무절차로 인해서 졸속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신다면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 발생은 우리가 처음부터 충분히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절차 무시하는 행동, 무시하는 일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 낭비 없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대통령님께 부탁하셔서 활용 방안을, 계획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세워 주시길 바라고요.

문화재청장님께는 이번에 한국 탈춤 유네스코에 등재한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주 위원님.

○유정주 위원 저는 박보균 문체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상임위가 열렸고 또 법안 상정을 하는 날이고요. 이미 만들어진 법안에 대한 실효성, 중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법안들도 작동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장관님, 지난 10월에 열린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공연을 사전에 검열했고 가수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곡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유정주 위원 신문 보고 아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유정주 위원 이 기념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념식 총감독하고 주최기관인 행정안전부 또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또 주관기관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행사의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검토하면서부터 행정안전부가 공연을 검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념식 내용을 들여다 본 행안부 공무원들이 ‘늑대가 나타났다’ 공연을 취소하고 가수 이랑 공연을 제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노래는 저항하는 약자들이 늑대, 마녀로 치부되는 사회 현실을 다룬 곡이에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이 곡 노랫말의 늑대가 마치 VIP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행안부는 미래 지향적인 밝은 느낌의 기념식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뿐 검열은 없었다 그런 말을 또 했는데요. 뉘앙스만으로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금지곡을 쏟아냈던 70·80년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장관님, 이것이 바로 명백한 문화예술 검열이고 부당한 지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체부장관으로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의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정 곡을 검열한 사실이 없고 감독과 가수 교체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유정주 위원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행안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나왔었고요, 그래서 빠진 경우입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바로 명백한 검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기관 등은 예술을 검열해서는 안 된다’에 위배가 되는 것 아니냐, 저희 의원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행안부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거지요.

또 피해자의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문체부가 행안부의 대변인 같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느낄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문체부가 사실 보호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장관님,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어떤 배경에서 제정되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유정주 위원 이 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재발을 방지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그리고 예술활동의 자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번 사안은 자유와 권익이 지켜지지 않는 명백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소관부처인 문체부가 행안

부의 부마항쟁 기념식 공연 가이드라인 제시와 검열과 특정 곡 가수 배제에 뒷짐을 지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입장이 있어야지요.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이 법에 따르면 ‘문체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 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월에 구성이 완료되지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유정주 위원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문체부장관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의 부마항쟁 기념식 공연 같은 검열 또 특정 곡과 가수 배제, 예술인 배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심의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 설립과 상관없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검열 사실이 없고 가수 교체, 감독 교체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파악했습니다.

○유정주 위원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주장입니까? 타 부처나 정부의 입장에서 검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면 지금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요, 검열 안 했다고. 기준은 예술인들이 느끼는 체감도입니다. 그것을 들으셔야 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예술인들이 검열을 받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재갈이 물렸다고 느꼈다면 그것은 장관님이 직접 만나서 현장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든,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듣기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뒷짐을 지고 있으시면 안 되고 별도의 입장 없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문체부가 왜, 어쨌서, 예술인들을 위해서 부처로서의 역할을 해 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문체부에 기댈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앞으로는 좀 더 썩썩하게 나서서 해야 할 일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 억압받지 않고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추가질의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8항까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각각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임종성 위원님, 류호정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안소위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법안 상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관련 규정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고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안타까운데요. 우리 상임위 역시 지난 7월 28일 간사 선임 및 처음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132일 동안 1소위, 2소위 각각 다 1건의 법안소위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각각 1회씩 열려 있는데요. 지난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진행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11월에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은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세 번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가 넘어가면 법안심사의 동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법안심사를 다룰 수 있는, 어떤 의욕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정이 내년 정기국회 시작하기 전 대략 한 8월 정도까지가 실제로 법안심사를 할 수 있는,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 법안소위가 자꾸 열리지 않으면 실제로 나중에는 법안이 많이 밀려서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선거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한 1개월 정도 남짓 시간에 각 소위원회에서 상임위별로 밀어내기 식으로 법안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칫하면 졸속으로 법안 심사가 되거나 또는 중요한 법안은 폐기 처분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를 우리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우리 문체위에도 약 350건이 넘는 법안이 제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소위가 국회법대로 개최되어서 관련되어 있는, 우리로서는 개별 법안인지 모르겠지만 이해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그 법안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결론은 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든 아니면 폐기 처분, 법안에 문제가 있어서 통과를 못 시키든 간에 우리가 법안을 다루어서 내용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 주는 것이 입법기관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님들께서도 또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법안소위 개최에 좀 더 협의를, 간사님들께서는 협의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법안소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12월 9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같은 날 9일 14시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 김운덕 소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이용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보균 장관 및 최응천 청장 등 관계부처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직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김 승 수	김 예 지	김 운 덕	류 호 정
배 현 진	유 정 주	이 개 호	이 병 훈
이 상 현	이 용	이 용 호	임 오 경
임 종 성	전 재 수	홍 익 표	황보승희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정 연 호
전 문 위 원	박 회 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	박 보 균
---	---	-------

기 획 조 정 실 장	강 석 원
문화예술정책실장	윤 성 천
종 무 실 장	김 대 현
정 책 기 획 관	최 성 희
문 화 정 책 관	정 향 미
예 술 정 책 관	이 은 북
지역문화정책관	이 중 료
콘텐츠정책국장	김 재 현
저작권국장직무대리	장 경 근
미디어정책국장	박 용 철
소 통 정 책 관	이 진 식
소 통 지 원 관	김 현 준
디 지 털 소 통 관	조 영 식
체 육 국 장	최 보 근
체 육 협 력 관	강 대 금
관 광 정 책 국 장	박 중 택
관 광 산 업 정 책 관	김 상 옥
문화재청	
청 장	최 응 천
기 획 조 정 관	안 형 순
문화재정책국장	최 원 일
문화재보존국장	황 권 순
문화재활용국장	채 수 희